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2년 8월 3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 이상민

●대통령령 제32893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“2022년 8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,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·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